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넬슨만델라규칙)

[1955년 8월 30일, 제1회 국제연합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됨 :
1957년 7월 31일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663 C(24)로서 승인됨 :
1977년 5월 13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2076(62)로서 수정되어 제95조가 새로 추가됨 :
2015년 12월 17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로 전면 개정됨]

서칙

서칙 제1조 본 규칙이 의도하는 바는 행형시설의 모범적 체계를 세세한 점까지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본 규칙은 오직 이 시대의 사조로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바와 현재로서 가장 적합한 체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와 교도소 운영에서 올바른 원칙과 실무로 여겨지는 것을 밝혀놓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서칙 제2조 ① 세계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및 지리적 조건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본 규칙의 전부가 모든 곳에서 언제나 적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본 규칙은 전체로서 UN에 의하여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조건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그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촉진할 것이다. ② 한편, 본 규칙이 다루는 영역에서 사조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본 규칙은 전체로서 그 본문에서 파생되는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목적들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인 한 실험과 실습을 배제하지 않는다. 중앙교정당국이 이 정신에 따라 본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은 항상 정당화될 것이다.

서칙 제3조 ① 본 규칙 제1부는 교도소 운영 일반을 다루며 법관이 명한 '보안·개선처분'에 놓인 피구금자를 포함하여 형사범이나 민사범, 미결수용자나 수형자 등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② 제2부는 각 절에서 다루는 특정 범주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A절의 규칙들은 B, C, D절에서 다루어지는 피구금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A절의 규칙이 B, C, D절의 규칙과 모순되지 않고 또한 그들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서칙 제4조 ① 본 규칙은 소년구금시설 또는 교정학교 등 소년들을 위하여 따로 마련된 시설의 운영을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1부는 이러한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② 소년피구금자의 범주에는 적어도 소년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소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들 소년들에게 구금형이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

제1부 통칙

기본 원칙

제1조 모든 피구금자의 처우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입각한 존중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어떠한 피구금자도 고문,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어떠한 방식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정당화될 수 없다. 피구금자, 직원, 용역 제공자 및 방문자의 안전과 보안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제2조 ① 이 규칙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의하여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피구금자의 종교적 신념과 도덕률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 차별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교정당국은 개별 피구금자의 필요, 특히 교도소 시설 환경 중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한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수한 필요를 가진 피구금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3조 구금행위 및 범죄자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그 밖의 처분은 자유를 박탈하여 자기 결정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사실 자체로서 고통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형집행 제도는 정당한 격리나 구울유지에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황에서의 고유한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제4조 ① 구금형 또는 이와 유사하게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의 주된 목적은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재범을 줄이는 것이다. 이 목적은 가능한 한 피구금자가 사회 복귀 이후 반드시 재통합하게 되도록 하여 그들이 법을 준수하고 자활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금기간이 이용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

② 이 목적을 위하여 교정당국 및 기타 담당 관청은 교육, 직업훈련, 작업, 기타 다른 형태의 보조수단으로서 적합하고 가능한 수단을 피구금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에는 교화적·도덕적·정신적·사회적 활동 등과 보건 기반 활동 및 스포츠 기반 활동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프로그램, 활동, 서비스는 피구금자의 개별적 처우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제5조 ① 구금제도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생활과 자유로운 외부생활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이 격차로 인하여 피구금자의 책임감이 저하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

② 교정당국은 형평성에 입각하여 신체적·정신적·기타 장애가 있는 피구금자들이 구금시설 내에서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배려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구금자 파일 관리

제6조 피구금자를 구금하는 모든 장소에서는 표준화된 피구금자 파일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 시스템은 전자 데이터베이스 기록을 이용하거나 페이지 번호를 붙이고 서명한 등

록부 형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감사 절차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 시스템에 담겨진 정보에 대한 권한없는 접속 및 수정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7조 유효한 구속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교도소에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피구금자의 입소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피구금자 파일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a) 피구금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이 때 피구금자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성별을 존중하여야 한다.
- (b) 구금 이유 및 책임기관, 체포 일시, 시간, 장소
- (c) 입소 일시, 석방 일시, 이송 일시
- (d)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상과 입소 이전 학대에 관한 내용
- (e) 개인 소지품 내역
- (f) 가족 성명, 해당하는 경우 자녀의 성명, 자녀의 나이, 거주지, 보호자 여부
- (g) 가까운 친척의 비상연락처

제8조 적절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구금기간 중 피구금자 파일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a) 사법절차에 관련된 정보. 공판기일 및 변호 정보를 포함한다.
- (b) 초기 판정 및 분류보고서
- (c) 피구금자의 태도와 규율 준수 여부에 관한 정보
- (d) 청원 및 불복신청.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주장을 포함한다. 다만 기밀내용은 제외한다.
- (e) 규율적 징벌내역에 관한 정보
- (f) 부상 또는 사망의 정황 및 원인에 관한 정보. 사망의 경우 시신의 안치 장소.

제9조 제7조와 제8조에서 명시한 정보는 기밀로 다루어져야 하고,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사람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 피구금자는 자국의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 본인과 관련된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석방 시 해당 기록에 대한 공식 사본을 받을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제10조 피구금자 파일 관리 시스템은 교도소 수용률을 포함하여 수용인원의 동향과 특성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여 증거기반 의사결정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분리

제11조 상이한 종류의 피구금자는 그 성별, 연령, 범죄경력, 구금의 법률적 사유 및 처우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분리된 시설 또는 시설 내의 분리된 구역에 수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 (a) 남성과 여성은 가능한 한 분리된 시설에 구금하여야 한다. 남성과 여성을 함께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여성용으로 할당된 공간 전체를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 (b) 미결수용자는 수형자와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 (c) 채무로 인하여 수용된 자 및 그 밖의 민사피구금자는 형사피구금자와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d) 소년은 성년과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거주설비

제12조 ① 취침설비가 각 방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피구금자마다 야간에 방 한 칸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과잉수용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방 한 칸에 2명의 피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② 공동침실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에서 서로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피구금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시설의 성격에 맞추어 야간에 정기적인 감독이 수행되어야 한다.

제13조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거주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상태와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건평,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4조 피구금자가 기거하거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모든 장소에는

(a) 창문은 피구금자가 자연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하며, 인공적인 통풍설비의 유무와 관계없이 창문으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b) 인공조명은 피구금자의 시력을 해치지 아니하고 독서하거나 작업하기에 충분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15조 위생설비는 모든 피구금자가 청결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제16조 적당한 목욕 및 샤워설비를 마련하여 모든 피구금자가 계절과 지역에 따라 일반 위생상 필요한 만큼 자주 기후에 알맞은 온도로 목욕하거나 샤워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할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되, 단 온대기후의 경우 그 횟수는 적어도 매주 1회 이상이어야 한다.

제17조 피구금자가 상시 사용하는 시설의 모든 부분은 항상 적절히 관리되고 세심하게 청결이 유지되어야 한다.

개인위생

제18조 ① 피구금자에게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건강 및 청결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물과 세면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구금자가 그들의 자존심에 부합하는 단정한 용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두발 및 수염을 다듬을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남성은 규칙적으로 면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의류 및 침구

제19조 ① 자기의 의류를 입도록 허용되지 아니하는 피구금자에 대하여는 기후에 알맞고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류는 결코 저급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의류는 청결하여야 하며 적합한 상태로 간수되어야 한다. 내의는 위생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만큼 자주 교환되고 세탁되어야 한다.

③ 예외적인 상황에서 피구금자가 정당하게 인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설 밖으로 나갈 때에는 언제나 자신의 사복 또는 너무 눈에 띄지 아니하는 의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20조 피구금자에게 자기 의류를 입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피구금자의 교도소 수용 시 그 의류가 청결하고 사용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지역 또는 나라의 수준에 맞추어 개별 침대와 충분한 전용침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침구는 지급될 때 청결하고 항상 잘 정돈되어야 하고 또 그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주 교환되어야 한다.

급식

제22조 ① 교정당국은 모든 피구금자에게 통상의 식사시간에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영양가와 위생적인 품질을 갖춘 잘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모든 피구금자는 필요할 때 언제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야 한다.

운동 및 스포츠

제23조 ①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년피구금자 및 적당한 연령 및 체격을 가진 그 밖의 피구금자에게는 운동시간 중에 체육 및 오락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설비 및 용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24조 ① 피구금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피구금자는 사회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무상으로, 법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보건의료 서비스는 일반 공공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이루고 있어야 하며, HIV 감염, 결핵, 기타 감염성 질환 및 약물 의존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치료 및 케어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제25조 ① 모든 교도소에는 피구금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진단, 증진, 보호, 개선하는 것

을 업무로 삼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특별한 보건의료 조치가 요구되거나 재사회화에 저해가 되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피구금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 서비스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그리고 충분한 수의 심리학 및 정신의학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즉 여러 전문영역에 걸친 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피구금자는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26조 ① 보건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모든 피구금자에 대한 정확한, 최신의 개별 의료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피구금자는 요청 시 자신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피구금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피구금자의 이송 시 그에 대한 의료기록은 수용시설로 전달되어야 하며, 의료상 비밀의무의 대상이 된다.

제27조 ① 모든 피구금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문적 치료 또는 외과수술을 요하는 피구금자는 특수 교정시설 또는 국·공립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교도소에 의료설비가 갖추어진 경우, 해당 의료설비는 진료를 위하여 오게 된 피구금자에게 원활한 치료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의료와 관련된 결정은 권한이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내려야 하며 비의료분야에 종사하는 교도소 직원은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여성 교도소에서는 산전 및 산후의 모든 간호 및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시설 밖의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이가 교도소 내에서 태어난 경우 이 사실은 출생증명서에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

제29조 ① 피구금자의 자녀가 피구금자와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그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피구금자의 자녀가 교도소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a) 피구금자가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자녀가 생활하여야 할, 자격있는 직원이 근무하는 내·외부 보육시설

(b) 아동전문 보건의료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입소시의 건강검진 및 발육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포함한다.

②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피구금자 자녀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구금자로 처우해서는 안 된다.

제30조 의사 또는 기타 자격이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는 의사에게 보고할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입소 후 가능한 한 조속히 면담 및 진찰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의 사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 각 피구금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치료를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취할 것.

(b) 신규 입소 피구금자가 입소 전 학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c) 구금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기타 스트레스 증상, 특히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 및 마약, 약물, 알코올 사용에 대한 금단증상을 확인하고, 모든 종류의 적절하고 개별화된 치료 또는 기타 처우를 실시할 것.

(d) 피구금자에게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감염기간동안 임상격리를 실시하고 적합한 치료를 제공할 것.

(e) 작업, 신체활동, 기타 활동 참여의 적합성 확인.

제31조 ① 의사 또는 자격이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는 질환을 앓고 있는 피구금자,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부상 문제를 호소하는 피구금자, 그리고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자 전원을 매일 진찰하여야 한다. 모든 의학적 검사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 ① 의사 또는 기타 보건의료 전문가와 피구금자와의 관계는 사회에서 적용되는 동일한 윤리적·전문가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준에 주의하여야 한다.

(a)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오로지 의료적 관점에서 예방·치료하여야 할 의무

(b) 자신의 건강에 대한 피구금자의 자기결정권을 지킬 것, 그리고 의사와 환자 간 관계에서 요구되는 설명과 동의

(c) 의료 정보의 비밀 유지. 다만, 이로 인하여 환자 또는 제3자에게 실제적,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d)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행위 또는 처벌에 해당할 수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의 엄격한 금지. 금지되는 행위는 예를 들어 피구금자의 세포, 신체 조직 또는 장기 적출과 같은 피구금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적·학문적 시도를 포함한다.

② 제1항 (d)호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구금자는 자신의 건강 회복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거나 친척에게 자신의 세포, 신체조직, 장기를 기부하기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또한 의무적 설명을 거친 후의 동의하에, 현행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교도소 밖에서 실시하는 임상실험이나 기타 건강조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33조 의사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 계속된 구금으로 인하여 또는 구금에 수반된 상황 어느 것에 의해서든 손상되었거나 또는 손상되리라고 판단하는 때는 언제든지 교도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입소 후 피구금자의 건강검사 또는 이후 치료과정에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의 징후를 인지한 경우 해당 보건의료 전문가는 이를 기록하고 관련 의료, 행정 또는 사법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피구금자 또는 관련자를 예측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절차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제35조 ① 의사 또는 담당 공공보건기관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행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장에게 조언하여야 한다.

- (a) 음식의 분량, 질, 조리 및 배식
- (b) 시설 및 피구금자의 위생과 청결
- (c) 시설의 위생관리, 난방, 조명, 및 통풍
- (d) 피구금자의 의류 및 침구의 적합 및 청결
- (e) 체육 및 스포츠 활동에 관하여 이를 담당하는 훈련된 인력이 없는 경우, 체육 및 스포츠 관련 규칙의 준수

② 소장은 의사가 제35조 제1항과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조언 및 보고를 참고하여야 하며, 그 조언 및 보고서의 권고내용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그 조언 또는 권고내용이 교도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거나 동의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교도소장은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의사 또는 담당 공공보건기관의 조언 또는 권고내용을 즉시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한, 규율 및 징벌

제36조 규율 및 명령은 안전한 구금과 교도소의 안전한 운영, 그리고 질서 있는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제37조 다음 각 호는 항상 법률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 (a) 규율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 (b) 부과할 징벌의 종류 및 그 기간
- (c) 그 징벌권을 갖는 기관
- (d) 독방격리수용, 격리, 분리, 특수 관리시설, 구속시설 등 다른 피구금자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구금하는 형식. 이러한 구금방식이 규율에 따른 징벌로 행해지거나 질서 유지 및 보안을 위해 행해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모든 강제적 분리구금 형식의 이용, 검토, 도입 및 폐지를 위한 지침제정 및 절차를 포함한다.

제38조 ① 교정당국은 규율 위반을 방지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갈등예방, 중재 및 기타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을 사용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② 교정당국은 분리구금되고 있거나 이전에 분리구금된 적이 있는 피구금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분리구금이 발생시킬 수 있는 피구금자에 대한 유해한 영향, 그리고 그의 석방 이후 사회에 미칠 유해한 영향을 완화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 ① 어떠한 피구금자도 제37조에서 언급된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 피구금자에 대한 징벌은 공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따라야 한다. 피구금자는 동일한 행동 또는 규율위반에 대해 이중으로 징벌받지 않아야 한다.

② 교정당국은 징벌 및 그 징벌의 원인이 된 규율위반 사이의 비례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부과된 모든 징벌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③ 교정당국은 규율에 따른 징벌을 부과하기 전에 피구금자의 정신질환 또는 발달장애가 그의 행동, 규율위반행위, 규율상 비난을 받아야 할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그런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위반사실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교정당국은

정신질환이나 발달장애로 인한 규율위반을 징벌하여서는 안 된다.

제40조 ① 어떠한 피구금자라도 교도소의 업무를 부여받거나 규율권한이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② 그러나 이 규칙은 특정한 사고, 교육 또는 스포츠 활동이나 책임을 직원의 감독 하에 처우 목적을 위하여 그룹으로 분류된 피구금자들에게 맡기는 자치에 기초한 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41조 ① 피구금자의 규율 위반에 대한 모든 혐의는 관련 기관에 즉시 보고되어야 하고 이를 보고받은 기관은 즉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피구금자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신에 대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즉각적인 통보를 받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적당한 시간과 시설을 제공받아야 한다.

③ 피구금자는 사법행정적 이익상 필요한 경우, 특히 중대한 규율위반 사항의 경우, 자신을 직접 방어하거나 필요시 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만일 심의절차가 피구금자가 이해하거나 말할 수 없는 언어로 진행되는 경우 전문 통역가에 의한 지원이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피구금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징벌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요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⑤ 규율 위반이 범죄로 형사기소되는 경우 피구금자는 법률자문에 대한 장애없는 접근 등 형사소송절차에 적용되는 모든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42조 조명, 환기, 온도, 위생, 영양, 식수, 야외활동, 운동, 개인위생, 보건, 적합한 개인 공간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이 규칙에서 다루고 있는 일반적인 생활에 대한 조건은 모든 피구금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43조 ① 제한 또는 규율에 따른 징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과 다름없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취급은 금지되어야 한다.

- (a) 무기한 독방격리수용
- (b) 장기 독방격리수용
- (c) 피구금자를 암실 또는 늘 불이 켜진 공간에 구금하는 행위
- (d) 체벌 또는 피구금자의 식사·식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
- (e) 집단 처벌

② 규율위반에 대한 처벌로 보호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규율위반에 대한 처벌 또는 제한적 조치로 가족과의 연락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가족과의 연락은 제한적 시간에 한하여, 그리고 보안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제한될 수 있다.

제44조 본 규칙에서 “독방격리수용”이라 함은 1일 중 최소 22시간을 실제 타인과의 접촉 없이 격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 독방격리수용”이라 함은 연속 15일을 초과하여 독방 격리수용함을 의미한다.

제45조 ① 독방격리수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한정해야 하고, 독립적인 심사를 조건으로 하며 담당기관의 승인 이후에 처분할 수 있다. 피구금자에 대한 형사판결을 이유로 하여 독방격리수용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②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구금자에 대한 독방격리수용 처분으로 인하여 그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면 독방격리수용 부과는 금지되어야 한다.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에 대한 유엔 기준 및 규범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독방격리수용 및 유사처분의 금지는 이 규칙에도 적용된다.

제46조 ① 보건의료 담당자는 규율위반에 따른 처벌 또는 기타 제한적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보건의료 담당자는 강제적으로 격리된 피구금자의 건강상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해당 피구금자를 매일 방문하여야 하며, 피구금자 또는 교도소 직원의 요청에 따라 의료지원 및 치료를 하여야 한다.

② 규율위반에 따른 처벌이나 기타 제한적 처분이 그 처분을 받는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건의료 담당자는 이를 즉시 교도소장에게 보고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이유로 처벌이나 처분의 종료 또는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 담당자는 피구금자의 강제적 격리에 대하여 심사하고, 피구금자의 건강상태 또는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격리로 인하여 더 악화되지 않도록 처분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보호장비

제47조 ① 굴욕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쇠사슬, 발목수갑 또는 보호장비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② 기타 보호장비는 법으로 정해 두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a) 호송 중 도피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되는 경우. 다만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출석할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b) 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써는 방지할 수 없어서 소장이 명령하는 경우. 이 경우 소장은 지체 없이 의사 또는 기타 자격이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알리고 상급행정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 ① 제47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보호장비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a) 보호장비는 보호장비 없는 상태에서의 행동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다른 대체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b) 보호장비는 위험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피구금자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c) 보호장비는 꼭 필요한 시기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피구금자에 대한 보호장

1)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 규칙」(결의안 45/113, 부속서) 제67조 및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방콕 규칙, 결의안 65/229, 부속서) 제22조 참조.

비가 없을 때의 행동에 위험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② 진통 중, 분만 중 및 분만 직후의 여성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49조 교정당국은 보호장비 사용의 필요성 및 그로 인한 침해를 줄이고, 보호장비 사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피구금자 및 거실에 대한 검사

제50조 피구금자 및 거실의 검사에 대한 적용 법령은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야 하며, 교도소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국제기준과 규범을 참작하여야 한다. 검사는 피검사자의 인간으로서의 본질적 존엄성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비례성, 합법성, 필요성 원칙을 지키는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51조 검사는 피구금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불필요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교정당국은 책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검사에 관한 내용을 적절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특히 알몸수색, 체강검사, 거실수색을 기록하고 검사의 이유, 검사 실시자 및 모든 검사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52조 ① 알몸수색과 체강검사와 같은 침해적 검사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교정당국은 침해적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개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침해적 검사는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교육을 받은 동성(同姓)의 직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체강검사는 피구금자의 보건의로 주책임자가 아닌 자로서 자격을 갖춘 보건전문가, 또는 적어도 의료전문가로부터 위생, 보건, 안전 기준에 적합한 교육을 받은 직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제53조 피구금자는 자신의 소송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소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서류에 대한 교정당국의 접근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보 및 불복신청

제54조 ① 모든 피구금자는 수용과 동시에 지체 없이 다음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a) 교도소법 및 구금 관련 법규

(b) 규정된 방식으로 정보를 구할 권리. 법률구조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법률 자문을 받을 권리. 청원 및 불복절차.

(c) 피구금자의 의무. 규율위반에 대한 처벌을 포함한다.

(d) 교도소 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모든 사항

제55조 ① 제54조에 명시된 정보는 피구금자의 필요에 따라 가장 통용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피구금자가 해당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통역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 ② 피구금자가 문맹인 때에는 전항의 정보는 구술로 알려주어야 한다. 피구금자가 감각 장애가 있는 때에는 이 정보는 그들의 필요에 따른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③ 교정당국은 해당 정보의 요약본을 교도소 내 공용지역에서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6조 ①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매일 소장 또는 그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직원에게 청원 또는 불복신청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② 피구금자는 자신에 대한 조사 중에 조사관에게 청원 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피구금자에게는 소장 또는 기타 직원의 참여 없이, 자유롭게 비밀이 유지된 상태에서 담당조사관 또는 다른 조사관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모든 피구금자는 내용의 검열을 받지 않고 허가된 경로에 따라, 검토 또는 구제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포함하여 중앙교정당국, 사법관청 또는 기타 관청에 자신의 처우와 관련하여 청원하거나 불복신청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④ 본 규칙 제1항 내지 제3항에 명시된 권리는 피구금자의 법률자문가에게도 적용된다. 이 때 만일 피구금자와 그 법률자문가 모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경우 피구금자의 가족이나 사안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제3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57조 ① 모든 청원 또는 불복신청은 즉시 처리되고 지체 없이 회답되어야 한다. 만일 청원 또는 불복신청이 거부되거나 부당하게 지체되는 경우, 이 상황을 사법기관 또는 관련기관에 제소할 수 있다.

② 피구금자들이 청원 또는 불복신청을 안전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청자가 요구하는 경우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안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피구금자 또는 제56조 제4항에 명시된 자는 청원 또는 불복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위협 또는 불이익을 당하거나 보복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③ 피구금자에 대한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사실에 대한 주장은 즉각 처리되어야 하며 제71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독립된 국가기관의 지체없는 공정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외부와의 교통

제58조 ①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친구와의 의사소통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 (a) 서신, 또는 이용가능한 통신, 전자, 디지털 및 기타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
- (b) 접견

② 배우자의 접견이 허용되는 경우 이는 어떠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허용되어야 하며 여성 피구금자의 경우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과 존엄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평등한 접촉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접견절차가 존재하고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59조 피구금자는 가능하면 가정이나 사회복지 장소와 근접한 곳에 구금되어야 한다.

제60조 ① 교도소를 방문하는 접견자의 입장은 접견자가 보안검색에 동의함을 전제로 한다.

접견자는 언제든지 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정당국은 접견자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접견자에 대한 보안검색 및 입장절차는 접견자에게 모욕감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적어도 본 규칙 제50조 내지 제52조에 명시된 기본원칙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체강검사는 피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아동에게 실시할 수 없다.

제61조 ① 피구금자는 스스로 선임한 법률자문가 또는 법률구조제공자와 접견, 소통, 상담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와 시간, 장소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지체·감청·탈취·검열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법적 사안에 대해서도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적용되는 자국 법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법률상담 진행 시 교정직원의 감시는 허용되나 교정직원이 대화를 청취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구금자가 구금지역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교정당국은 독립 통역사의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

③ 피구금자는 효과적인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62조 ① 외국인인 피구금자는 소속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영사와 소통하기 위한 상당한 편의가 허용되어야 한다.

② 구금된 국가에 외교대표나 영사가 없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피구금자와 망명자 또는 무국적자에게는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이러한 자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전향과 동일한 편의가 허용되어야 한다.

제63조 피구금자는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시설의 특별간행물을 읽고 방송을 청취하고 강연을 들음으로써, 또는 교정당국이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보다 중요한 뉴스를 정기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도서

제64조 모든 교도소는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 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며 피구금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종교

제65조 ① 교도소 내에 같은 종교를 가진 피구금자가 충분히 있는 경우 그 종교의 자격 있는 대표자가 임명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인원수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또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이 조치는 상근제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승인된 자격 있는 대표자는 정기적으로 종교의식을 행하고, 적당한 시간에 그 종교 소속의 피구금자와 종교적 개별 접견을 하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③ 어느 피구금자에게도 어떠한 종교의 자격있는 대표자에 대한 접근도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반면 피구금자가 어떠한 종교적 대표자의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그의 태도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제66조 실제로 가능한 한 모든 피구금자는 교도소 내에서 거행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또 자기 종파의 계율서 및 교훈서를 소지함으로써 종교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소유물 보관

제67조 ① 교도소 규칙에 의하여 피구금자가 소지하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그의 소유에 속하는 모든 금전, 유가물, 의류 및 기타의 물건은 입소할 당시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보관물에 관하여는 명세서를 작성하고 피구금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관물을 양호한 상태에 두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② 모든 보관금품은 피구금자를 석방할 때 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다만 석방 전에 피구금자가 금전을 사용하거나 보관물품을 교도소 밖으로 송부하는 것이 허가된 경우 또는 위생상의 이유로 의류를 폐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피구금자는 반환받은 금품에 관하여 영수증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외부로부터 피구금자를 위하여 수취한 금전 또는 물품도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④ 피구금자가 약물을 반입하는 경우, 의사 또는 기타 자격이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는 약물의 용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통지

제68조 모든 피구금자는 자신의 구금, 다른 시설로의 이송 및 중병 또는 부상 발생에 대하여 즉시 가족 또는 통지인으로 지명된 제3자에게 알릴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통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구금자의 개인정보의 공유는 자국의 법규에 따른다.

제69조 피구금자의 사망 시 교도소장은 피구금자의 근친 또는 비상연락처로 즉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피구금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취하기로 지명된 사람은 교도소장으로부터 피구금자의 중병, 부상,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에 대한 통보를 받아야 한다. 피구금자가 자신의 질병 또는 부상을 배우자나 근친에게 알리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피구금자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제70조 교정당국은 피구금자의 근친 또는 배우자의 중병이나 사망소식을 피구금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피구금자는 단독으로 또는 계호 하에 위독한 친지 또는 배우자를 방문하거나 그들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사

제71조 ① 교도소장은 피구금자의 사망, 실종, 심각한 부상 발생 시, 내부 조사와 관계없이 이를 법원 또는 교정당국과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이러한 사건의 상황과 원인을 빠르고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도록 위임된 담당기관에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교정당국은 이

기관에 최대한 협조하고 모든 증거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교도소 내에서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이 행해졌음을 의심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으면 공식적인 진정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본조 제1항의 의무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③ 본조 제2항에 명시된 행위를 하였다든 혐의를 인정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혐의 가능성이 있는 자가 조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증인이나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한다.

제72조 교정당국은 사망한 피구금자의 시신을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대하여야 한다. 피구금자의 시신은 그의 최근친에게, 수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늦어도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인계되어야 한다. 교정당국은 장례식을 치를 사람이 없는 경우 문화적으로 적절한 장례식을 치르고 모든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피구금자의 이송

제73조 ①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는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환기나 조명이 불충분한 교통수단에 의하거나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피구금자를 이송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③ 피구금자의 이송은 교정행정의 비용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균등한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교도소 직원

제74조 ① 시설의 적절한 운영관리는 직원의 진실성, 인간성, 업무능력 및 직무에 대한 개인적인 적합성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교정당국은 모든 계급의 직원 채용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교정당국은 교정업무가 매우 중요한 사회공공사업이라는 확신을 직원 및 일반대중 모두에게 일깨우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위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직원은 상근직의 전문 교정직원의 지위로 고용되어야 하고, 선량한 품행, 능력 및 건강이 결여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을 지녀야 한다. 직원의 보수는 적합한 남녀를 채용하여 계속 머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고용상의 복리 및 근무조건은 고된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적합하여야 한다.

제75조 ① 모든 교도소 직원은 적절한 교육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수단을 제공받아야 한다.

② 모든 교도소 직원은 직무를 부여받기 전에 일반적 임무 및 특수 임무에 관하여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교육은 행정학 중 현대의 실증 기반의 최상의 실무를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 후 이론 및 실무 시험을 합격한 자만이 교도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교정당국은 직원들이 직무수행을 시작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지식과 전문성을 유지·향

상시하기 위한 교육 코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6조 ① 제75조 제2항이 규정하는 교육에는 최소한 다음의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자국의 관련법규 및 지침, 그리고 적용가능한 국제적·지역적 법적 수단들로서, 그 조항이 교도소 직원의 업무 및 피구금자와의 상호작용의 지침이 되는 것들.

(b) 교도소 직원의 업무수행시의 권리와 의무. 이에는 모든 피구금자의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 그리고 특히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과 같은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c) 보안 및 안전. 이에는 동적 보안(dynamic security) 개념, 강제력과 보호장비의 사용, 폭력범 관리 등이 포함된다. 이 때 협상, 중재와 같은 예방적·완화적 수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d) 응급조치, 피구금자의 심리사회적 필요 및 그에 상응하는 교도소 환경 역학, 그리고 사회적 보호조치 및 지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이 포함된다.

② 특정 부류의 피구금자를 관리하거나 기타 특수 직무를 담당하는 교도소 직원은 그 부분에 중점을 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7조 모든 교도소 직원은 항상 모범을 보여 피구금자를 감화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8조 ① 가능한 한,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교사 및 직업교육강사와 같은 전문가가 교도소 직원으로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교사 및 직업교육강사는 상근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제 또는 자원봉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79조 ① 교도소장은 성격, 행정능력, 적절한 교육과 경험에 의하여 그 직무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지녀야 한다.

② 교도소장은 자기의 모든 근무 시간을 그 공적 임무에 바쳐야 하며 비상근직으로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교도소장은 교도소 또는 인접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③ 2개 이상의 교도소가 소장 1인의 소관 하에 있는 경우, 교도소장은 각 시설을 자주 방문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설의 경우 각 시설을 담당하는 상근 책임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제80조 ① 교도소장, 그 대리자 및 기타 대다수의 교도소 직원은 최다수의 피구금자가 사용하는 언어 또는 최다수의 피구금자가 이해하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능숙한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81조 ① 남녀 피구금자를 함께 수용하고 있는 교도소에서 여성구역은 여성 담당직원의 책임 하에 관리하며, 이 여성직원이 그 구역의 모든 열쇠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남성직원은 여성직원의 동반 없이는 여성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③ 여성피구금자는 여성직원에게 의하여서만 보호, 감독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성직원, 특히 의사 및 교사가 여성교도소 또는 교도소 내 여성구역에서 전문적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제82조 ① 교도소 직원은 정당방위의 경우, 피구금자의 도주 시도, 법령에 의거한 명령에 대항하는 적극적, 소극적, 신체적 저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구금자와의 관계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교도소 직원이 물리력을 사용할 경우 엄격히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즉시 소장에게 사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도소 직원은 공격적인 피구금자를 제지할 수 있도록 특수체력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직무상 피구금자와 직접 접촉하는 교도소 직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를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 더구나 무기의 사용에 관한 훈련을 받지 아니한 교도소 직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내·외부 감독

제83조 ① 교도소와 형집행에 있어 정기적인 감독은 다음과 같은 이원적 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a) 중앙 교정당국에서 실시하는 내부 감독 또는 행정적 감독

(b) 교정당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기관에 의한 외부 감독. 이러한 기관에는 전문적인 국제기관 및 지역기관이 속할 수 있다.

② 내·외부 감독에서 감독의 목적은 교도소가 현행법령, 지침 및 절차에 따라, 행형목적의 달성이라는 관점 하에서 운영되고 피구금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제84조 ①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a) 피구금자 인원과 장소에 관한 모든 정보 및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들에 관한 기록과 구금조건을 포함한다.

(b) 어느 교도소를 방문할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할 수 있으며 어떤 피구금자와 면담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한다.

(c) 방문 시 피구금자 또는 직원들과 단독으로 비밀면담을 실시 할 수 있다.

(d) 교정당국과 기타 담당기관에 권고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② 외부감독팀은 자격이 있고 경험이 많은 감독관으로 구성되며, 담당기관으로부터 임명받으며, 보건의전문가가 포함된다. 또한 양성을 공평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제85조 ① 감독을 실시한 후에는 담당기관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부감독에 관한 보고서를 출판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보고서 출판 시에는 피구금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피구금자의 개인정보를 수록할 수 있다.

② 교정당국 또는 경우에 따라 기타 담당기관은 합당한 시일 내에 외부 감사를 통해 제시된 권고사항을 반영할 것인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

A. 수형자

지도 원리

제86조 아래의 지도원리는 교정시설이 운영되어야 할 정신 및 지향하여야 할 목적을 본 규칙서칙 제1조의 선언에 맞추어 제시하려는 것이다.

제87조 형기종료 이전에 수형자를 사회에 단계적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목적은 경우에 따라 같은 교도소 또는 다른 적당한 시설에 마련된 석방준비제도에 의하거나 일정한 감독 하에서 시험적으로 행하는 석방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은 경찰에 맡겨져서는 안 되고 효과적인 사회적 원조와 결부되어야 한다.

제88조 ① 수형자의 처우는 사회로부터의 배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계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기관들은 가능한 한 어디서든지 수형자의 사회복귀사업에 관하여 교도소 직원을 원조하기 위하여 참여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는 모든 교도소와 연계하여 수형자와 가족 및 유용한 사회기관 사이의 모든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법률 및 형사판결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수형자의 사법상의 이익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상의 권리 및 그 밖의 사회적 이익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89조 ① 이 지도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처우의 개별화가 필요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피구금자를 그룹으로 분류하는 신축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들 그룹은 각각의 처우에 적합한 개별 교도소에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교도소가 모든 그룹에 대하여 동일한 정도의 보안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 상이한 그룹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방교도소는 도주에 대한 물리적 보안조치 없이 피구금자의 자율을 신뢰하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하여 신중하게 선발된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가장 유익한 상황을 제공한다.

③ 폐쇄교도소 내 수형자의 수는 개별처우가 방해받을 정도로 많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들 교도소의 수용인원이 500명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개방교도소의 수용인원은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

④ 다른 한편으로, 적당한 설비를 마련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교도소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제90조 사회의 의무는 수형자의 석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석방된 수형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효과적인 갱생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기관 또는 사설기관이 있어야 한다.

처우

제91조 구금형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처우는 형기가 허용하는 한 그들이 석방된 후에 준법적이고 자활적인 생활을 할 의지를 심어주고 이를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처우는 그들의 자존심을 키워주고 책임감을 고취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92조 ① 이 목적을 위하여, 종교적 배려가 가능한 국가의 경우 종교적 배려, 교육, 직업지도 및 훈련, 개별상황에 맞춘 사회원조활동, 취업상담, 신체의 단련과 덕성의 강화를 포함하는 모든 적당한 방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수형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그 사회적, 범죄적 경력, 신체와 정신의 능력과 적정성, 개인적 기질, 형기 및 석방 후의 전망이 참작되어야 한다.

② 교도소장은 적당한 형기에 놓인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수용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동조제1항의 사항 전부에 관하여 완전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 이 보고에는 반드시 수형자의 신체와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 또는 그 밖의 자격을 가진 보건의료 전문가의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고서와 그 밖의 관계문서는 개별 문서철에 편철되어야 한다. 이 문서철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담도록 유지되고 필요한 때에는 언제라도 책임 있는 직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분류되어야 한다.

분류 및 개별화

제93조 ① 분류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a) 범죄경력이나 성격으로 인하여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수형자를 다른 수형자로부터 격리하는 것

(b) 수형자의 사회복귀라는 관점에서 처우를 용이하게 하고자 수형자를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

② 상이한 그룹의 수형자의 처우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별개의 교도소 또는 분리된 구역이 사용되어야 한다.

제94조 적당한 형기를 받은 수형자를 수용하고 인성검사를 실시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때 처우는 개인적 필요, 능력 및 성향에 관하여 얻은 정보를 참작하여야 한다.

특전

제95조 수형자의 그룹과 처우방법에 따라 각각 적합한 특전제도를 모든 교도소에 두어 선행을 장려하고 책임감을 향상시키며 처우에 관한 수형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제96조 ① 형을 받은 수형자에게는 작업활동 및/또는 사회복귀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의사 또는 그 밖의 자격을 가진 보건의료 전문가가 수형자의 신체적·정신적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확정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② 통상 작업일에는 수형자가 활동적으로 작업하도록 유용하고 충분한 작업량이 주어져야 한다.

제97조 ① 교도작업은 성질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② 수형자는 노예상태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③ 수형자는 교도소 직원의 개인적·사적 이익을 위해 작업하여서는 안 된다.

제98조 ① 가능한 한 수형자에게 제공되는 작업은 그가 석방 후 정직한 생계를 꾸릴 능력을 유지시키거나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② 실용적인 직종의 직업훈련은 그 직종으로 소득을 얻을 능력이 있는 수형자와 특히 소년수를 위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③ 수형자는 적당한 직업선택에 부합하고 시설관리와 규율의 필요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종류의 작업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

제99조 ① 교도작업의 조직 및 방법은 가능한 한 교도소 밖의 동종 작업과 유사하게 하여 수형자를 정상적인 직업생활 환경에 준비시켜야 한다.

② 그러나 수형자의 이익 및 이들의 직업훈련의 이익은 교도소 내 사업에서 얻는 재정적 이익이라는 목적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제100조 ① 시설의 공장 및 농장은 되도록 교정당국에 의하여 직접 운영되어야 하고 개인 계약자에 의하여 운영되지 않아야 한다.

② 수형자는 교정당국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작업에 종사할 경우에도 항상 교도소 직원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작업이 정부의 다른 공공부서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한, 작업을 제공받는 자는 이러한 작업에 대한 충분한 통상임금을 교정당국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 수형자들의 생산고가 참작되어야 한다.

제101조 ① 자유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교도소 내에서도 동일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② 직업병을 포함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수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제102조 ① 수형자의 하루 및 주당 최대 작업시간은 자유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적 기준과 관습을 참작하여 법률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정해진 작업시간은 주당 하루의 휴일과 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사회복지 원조의 일부로서 요구되는 교육과 그 밖의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남겨두는 것이어야 한다.

제103조 ① 수형자의 작업에 대한 공정한 보수제도가 있어야 한다.

② 이 제도 하에서 수형자는 적어도 수입의 일부를 자신의 용도를 위하여 허가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일부를 가족에게 보내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③ 이 제도는 아울러 교정시설이 수입의 일부를 떼어 저축기금을 마련하여 석방 시 수형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교육 및 오락

제104조 ① 성인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형자에게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 교육에는 종교교육이 가능한 국가의 경우 종교교육도 포함된다. 문맹자 및 소년수형자의 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하고 교정당국은 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② 가능한 한 수형자 교육은 그 국가의 교육제도에 통합하여 수형자가 석방 후 어려움 없이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5조 오락 활동과 문화 활동은 수형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모든 교도소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관계 및 갱생보호

제106조 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쌍방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07조 수형자의 형기가 시작될 때부터 석방 이후의 미래에 관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교도소 외부의 개인 또는 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원조하여 수형자 자신의 사회복귀와 수형자 가족의 최상의 이익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08조 ① 석방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부의 또는 그 밖의 부서와 기관은 가능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피석방자가 적절한 문서 및 신분증명서를 지급받고, 돌아갈 적절한 주거와 직업을 가지며, 기후와 계절을 고려하여 적당하고 충분한 의복을 입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석방 직후의 기간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자금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들 기관의 승인된 대표자는 교도소 및 수형자와 필요한 모든 접촉을 가져야 하며 또 수형자의 장래에 대하여 형기 시초부터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③ 이 기관들의 활동을 가능한 한 중앙에 집중시키거나, 효용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정신장애 및/또는 정신질환 수형자

제109조 ① 형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자 또는, 범죄 이후에 중증정신장애 및/또는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자의 교도소 생활이 그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 이들은 교도소에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을 가능한 한 신속히 정신보건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준비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② 기타 정신장애 및/또는 정신질환 수형자는 필요한 경우 승인된 보건전문가의 감독 하에 특수한 시설에서 관찰되고 치료될 수 있다.

③ 보건의료서비스 부서는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모든 수형자들에게 정신의학적 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0조 적절한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석방 후 정신치료를 계속하고 사회정신학

적 사후보호 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

C. 미결수용자

제111조 ① 범죄의 혐의로 체포 또는 구속되어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에 유치중인 채 아직 사실심리와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에서 이하 '미결수용자'라고 한다.

②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피구금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무죄인 자로서 처우되어야 한다.

③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나 미결수용자에 관하여 준수되어야 할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미결수용자는 이하의 규칙에서 핵심사항에 관하여서만 기술하고 있는 특별한 제도에 의하여 혜택을 받아야 한다.

제112조 ① 미결수용자는 수형자와 분리수용되어야 한다.

② 소년 미결수용자는 성인과 분리되며 원칙적으로 별개의 시설에 구금되어야 한다.

제113조 미결수용자는 기후에 따라 상이한 지역적 관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거실에서 혼자 자야 한다.

제114조 시설의 질서와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미결수용자는 희망하는 경우 자기의 비용으로 교정당국, 가족 또는 친구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들어온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교정당국이 이들의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5조 미결수용자에게는 청결하고 적당한 사복을 입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미결수용자가 죄수복을 입는 경우 그 죄수복은 수형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다른 것이어야 한다.

제116조 미결수용자에게는 항상 작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나 작업의 의무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미결수용자가 작업하기로 선택한 경우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제117조 미결수용자에게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비용으로 사법행정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지 않는 서적, 신문, 필기용구 및 기타 소일거리를 구입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118조 미결수용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청하고 모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자신의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방문과 치료를 받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119조 ① 미결수용자는 자신의 구금사유 및 제기된 혐의가 무엇인지 즉시 알 권리가 있다.

② 미결수용자가 스스로 선임한 법률자문가가 없는 경우, 미결수용자는 사법행정적 이익상 필요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법원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법률자문가를 선임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때 미결수용자가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경우 법률자문가 선임은 미결수용자의 비용 지불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법률자문가의 조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0조 ① 미결수용자의 변호를 목적으로 미결수용자가 법률자문가 또는 법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접견할 수 있는 권리 및 그 방식은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원칙과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② 미결수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그의 변호에 관련된 서류 - 이에는 법률자문가 또는 법적으로 지원하는 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비밀의 지시문서가 포함된다 - 작성을 위한 필기용구가 주어 져야 한다.

D. 민사상의 피구금자

제121조 법률상 채무로 인한 구금 또는 기타 비형사적 절차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구금이 허용되고 있는 국가에서 이들 피구금자는 안전한 구금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는 어떠한 속박이나 고통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작업의 의무가 과하여질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보다 불리하여서는 안 된다.

E. 혐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

제122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²⁾ 제9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범죄의 혐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본 규칙 제1부와 제2부 C절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본 규칙 제2부 A절의 관련규정도 그 적용이 이 특수한 그룹에 속한 피구금자에게 이익이 될 때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재교육이나 갱생조치가 타당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 된다.

2) 결의안 2200 A(XXI), 부속서 참조.